

지방자치단체공무원 · 지방의회의원의 지식 · 정보의 삼

월간

자치행정 10

Journal THE LOCAL GOVERNMENT STUDIES

No.247
2008

특별기획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체계의 전환

지방재정 정보화의 개선방향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제도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제도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

“ 읍면동 행정을 민주화하니 동네자치가 보인다 ”

지방의정

56 지방의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김준배 / 아산시의회 의장
한국산업기술원 부설



김준배 의장

58 실전중심 지방의정 Workshop(3)

서우선 / 한국지방자치연구소장

사무의 민간위탁과 의회의 동의(3)

61 지방의회 의정비 무엇이 문제인가?

이한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62 지방의회운영 Q&A(36)

최민수 / 국회 입법정보실장

지방의회 위원회의원의 선임 및 사임(1)

64 일본지방의회 <편집실>

의회가 실행부 행성을 평가한다

(사) 지방행정연구소

<http://www.lari.re.kr>

지방의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지방의회의 의정 성과 제고를 위해 2006년도부터 유급제가 도입되었으나, 최근 행안부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계획과 관련하여, 인상률과 심의과정에 대한 적정성과 투명성 등에 대한 논쟁으로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 언론 등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에 대한 소위 '마녀사냥식' 부정적인 평가에 대하여 의원들은 심한 우려와 함께 의욕 상실은 물론 의원직 자체에 대한 수치심까지 느끼고 있을 정도이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지급 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지급토록 명시되어, 이 법과 시행령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원들에게 의정비를 지급해 왔다.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방의원의 의정비 일체는 국비가 아닌 지방자치 단체 예산으로 주어지고 있나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원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의정비를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 어느 정당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겠다는 정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 어느 후보자도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하여 거론한 적이 없었다.

지난, 8월 행안부는 최초 결정된 2006년도와 그대로 전년 2007년도 의정비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인할 생각이 없이 돌발적이고 갑작스



김 준 배

아산시의회 의장

롭게 지방의원의 의정비가 과다 인상되었다면서 처음 듣는 산출방식이다. 주민의 의식조사 결과를 빙자하여 지방공무원의 보수결정에도 적용하지 않는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인구수를 기준으로 의원들의 의정비 최고수치(가이드라인)를 정하고 그 10% 범위 내에서 또다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입법 예고까지 마쳤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고자 한다는 정책이 국회의원은 1인당 연4억6천여만원(연봉과 활동지원비 보좌진연봉과 사무실 운영비등)의 비용이 들어가는 세비 조정에는 항구 하면서, 임도 없고 권력도 없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삭감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추락한 인기도를 만회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안부와 정치인에게 묻고 싶다. 국회의원의 장관급 세비와 각종 수당 및 상여금(800% : 정근수당 200%, 기말수당 200%, 명절휴가비 250%, 가계지원비 150%, 문화일보 2008. 6. 16. 9면 참조)은 누가 결정하는가?

또한 이들이 받는 세비가 많다고 가이드라인

을 정해본 적이 있으며, 국민들에게 이들이 받는 세비가 모두 얼마인데 적정한 것인지 설문조사 해본 적이 있는가?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입법기관이고,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며 자치단체 집행부를 감시한다는 측면에서 국정과 자치행정의 대상만 다를 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의원과의 직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다른가?

이와 같은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반대급부가 세비와 의정비인 것이다. 국회의원의 세비와 지방의원의 의정비가 지금금액상 차이는 나아하지만, 그 결정기준·방법·절차는 헌법의 평등원칙에서 볼 때 같아야 옳지 않는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국회)규칙」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매년 결정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세비를 받고 있다. 지금 받는 세비의 내역을 보면, 생활비 성격인 기본급 정액수당과 업무추진비 성격인 실비급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다가 위에서 언급한 상여금 등이다. 그러나 이 세비를 결정하는 기준·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보수인상을” 외에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다. 즉, “국회의원 세비 심의위원회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유독, 지방의회 의원의 수당만을 여러 가지 조건과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원은 무엇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결정된 의정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속된 표현으로 ‘동네 복’ 취급하여 행안부가 제제하고, 심의위원에서 매질하여 주는 것이 의정비라면 형평성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 된다 하겠다.

국회의원은 정당공천제를 만들어 공천권한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지방의원들을 마치 자기 하수인 다루듯이 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의원의 의정비 문제는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도외시하고 있다. 국회의원 세비도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과 이·통장이 주천한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세비를 지급토록 하여야 국민의 대표와 주민의 대표 간에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 국회는 당초 지방자치법을 제정할 때부터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견제 감시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의 큰 목적은 뒤로한 채 시늉만 해 놓았다.

지방의원의 대우를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무보수 봉사직으로 두었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지방의원들의 주장이다.

현재와 같이 마치 시민들의 혈세나 축내는 지방의원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방의원들이 공신력과 신의를 잃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전한 지방자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부당국과 국회는 지방의회 발전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은 유급직을 해단라고 시위나 데모를 한 적이 없다. 정부당국과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여 도입한 것이므로 지방의회를 기준으로 할 때는 타율적인 유급직 제도인 것이다.

먼 장래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위한 요소가 있는, 최근 입법 예고를 끝낸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시행착오를 시인하고 현재 법리에 모순된 지방자치법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주민의 대변 기관인 지방의회 육성과 함께 지방자치 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제도 폐지, 지방의회공무원 인사권 독립 등 새로운 정책을 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